

샌프란시스코 노회
미국 장로교회

상임 규정

2018년 6월 5일 승인

2019년 2월 개정

목차

제1장 – 노회 구성원 및 회의	4페이지
제2장 – 노회 임원	5페이지
제3장 – 운영 규정	7페이지
제4장 – 상임 위원회	8페이지
조정 위원회	9페이지
비전 팀	12페이지
목회 위원회	12페이지
목회 준비 위원회	14페이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위원회	15페이지
재정 및 재산 위원회	16페이지
인사 위원회	17페이지
후보자 추천 위원회	18페이지
대표성, 소속감 및 역량 강화 위원회 (19페이지)	
법안 및 건의 위원회	19페이지
새 예배 공동체 위원회	20페이지
제5장 - 실무 그룹, 태스크포스 및 프로젝트 팀	20페이지
제6장 - 위원회: 상설 및 단기	21페이지
상임 사법 위원회	21페이지
회의 기록 검토 위원회	21페이지
기타 행정 위원회	22페이지
제7장 – 노회 간 위원회	23페이지
앤 펜케 기념 기금 자문 위원회	23페이지
자기개발 위원회	23페이지
제8장 – 법인체	23페이지
제9장 – 노회 직원	24페이지
제10장 – 규정 개정 및 규정 정지	25페이지
행정 운영 지침서 (개정 예정)	26페이지

행정 운영 매뉴얼 및 부록 (개정 예정)

위원회 검토 및 노회 승인을 거친 정책 및 절차

노회에서 채택됨

행정 운영 매뉴얼 (G-3.0106)

부록 A	노회 § 기존 상임 규정에서 옮겨진 조항	중점 사항 및 우선순위 2009년 11월 10일 2018년 6월 5일
부록 B	사역 정책 위원회	2005년 1월 11일
부록 C	심사 및 수령 지침 말씀과 성례 목사 (5개 정책)	2007년 5월 8일
부록 D	임명된 치리 장로에 관한 정책 § __	2006년 6월 25일
부록 E	준비 과정 및 절차 사역 과정 § __	2013년 3월 12일
부록 F	성적 비행 방지 정책	2007년 11월 17일
부록 G	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및 선출 총회 § __	2013년 1월 29일
부록 H	인사 정책 § __, § __	2003년 5월 13일 (검토 중)
부록 I	커뮤니케이션 및 회의 관련 정보 배포 지침 § __	2006년 1월 10일
부록 J	교회의 화해 및 해산	2013년 6월 25일
부록 K	재정 및 재산 감독 § __	(검토 중)
부록 L	예산 절차 § __	(검토 중)

『질서서』(Book of Order)의 인용은 2023-2025년 버전을 기준으로 하며, G 또는 F-참조 번호로 표기합니다.

본 상규는 이전에 제정된 모든 규정을 대체합니다.

제1장

노회 회원 및 회의

1. 1 회원 자격 노회의 회원 자격은 G-3.0301 및 3.0306 조항과 캘리포니아 종교 법인인 샌프란시스코 노회(『법인』)의 정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2 노회는 최소 분기별로 모여야 한다.
1. 3 예배 각 회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주의 만찬 성례는 최소 연 1회 거행되어야 한다.
1. 4 11월 회의는 연례 회의 법인의 연례 회의로서, 이때 의장, 부의장(또는 공동 의장), 상임 위원회 위원 및 상임 재판 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의장과 부의장(또는 공동 의장)은 일반적으로 선출 후 다음 해 1월 1일에 취임한다. 의장과 부의장(또는 공동 의장)은 선출 후 다음 노회 회의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새로운 법인 임원들은 선출 즉시 법인 직무를 수행한다.
1. 5 각 세션은 G-3.0202에 따라 노회의 각 회의에 참석하고 토의에 참여하며 보고할 권리 장로 대표를 선출할 의무가 있다. 권리 장로 대표의 수는 노회가 '행정 운영 지침서'에서 정한다.
1. 6 노회의 의장 및 부의장(또는 공동의장)과 서기, 그리고 회의가 개최되는 교회의 담임목사와 노회 회의 운영 작업반 위원장은 해당 회의 준비를 공동으로 책임진다.
1. 7 서기는 노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노회 회의에서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
1. 8 노회 모든 회의의 공지사항, 의제,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회의 개최 최소 10일 전에 전자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회의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은 신규 안건으로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간략히 소개된 후 관련 위원회 등에 회부된다. 신규 안건을 회의에서 즉시 표결하려면 표결 시점의 정족수 충족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 9 특별 회의 조정 위원회가 소집하거나, 말씀과 성례 목사 5인 이상이 서기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5명의 통치 장로로, 최소 8개 교회를 대표해야 합니다. 회의는 전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 장소, 논의 사항에 대한 통지는 회의 최소 7일 전에 전자적으로 발송 및 게시되어야 합니다.

1. 10 A 정족수 노회 정기 또는 임시 회의의 정족수는 노회 소속 '말씀과 성례 목사' 회원 중 인증된 사역을 하는 자의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한 최소 인원수의 통치 장로 대표자들이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이때 통치 장로 대표자들은 최소 10개 교회를 대표해야 합니다.
1. 11 전자 회의 노회, 위원회, 특별위원회, 작업반 및 노회가 설치한 기타 단체의 회의는 전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구성원에게 회의 일정, 안건,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가 최소 1주일 전에 통지되어야 하며, 실시간으로 다른 참가자의 발언을 듣고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장

노회 임원

2. 1 의 임기는 의장 및 부의장 (또는 공동의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선출된 회의 이후 1월 1일부터 후임자의 임기 시작까지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이며, 공동의장의 임기는 2년씩 교대로 수행된다.
2. 1.1 의장은 노회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에게 주재를 요청할 수 있다. 공동의장이 있는 경우에는 교대로 회의를 주재한다. 둘 모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공동의장)은 전임 의장을 주재자로 지명할 수 있으며, 또는 조정 위원회가 임시의장을 임명하여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게 할 수 있다. G-3.0104
2. 1.2 의장 및 부의장(또는 공동의장)의 직위가
사임, 사망,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 해당 직위는 4.9조의 규정에 따라 보궐된다.
2. 1.3 의장은 법인의 부회장을 겸임한다. 공동의장이
선출된 경우, 노회에서 그 중 한 명을 법인의 부회장으로 지명한다.
법인
2. 1.4 의장과 부의장(또는 공동 의장)은
조정 위원회의 발언권 및 투표권을 가진 구성원이어야 한다.
2. 2. 집행 장로 . 노회는 인사 위원회가 정한 탐색 및 초빙 절차를 통해 집행 장로를 초빙하고 선출한다. 집행 장로는 직원의 수장으로서

인사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집행 장로는 G-3.0110에 따라 노회의 의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집행 장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당연직 최고 경영자로서, 본 규정 또는 PC(USA) 헌법에 따라 필요한 동의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모든 업무 및 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대표이사는 조정 위원회 또는 상임 위원회가 승인한 서기 또는 기타 적절한 법인 임원과 함께, 조정 위원회 또는 상임 위원회가 실행을 승인한 증서, 모기지, 채권, 계약 또는 기타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단, 서명 및 실행이 정관 또는 본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해 법인의 다른 임원 또는 대리인에게 특별히 지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집행 장로는 최고 경영자 직무와 관련된 모든 의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수시로 규정할 수 있는 기타 의무를 수행한다.

2. 3 해당 서기(Stated Clerk) 초선 시 보통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기로 선출된다. 첫 임기 이후 서기는 무제한의 3년 임기로 재선될 수 있다. 선출은 임기 마지막 해에 진행된다. 서기는 일반적으로 선출된 회의가 폐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직무를 시작한다. 서기(Stated Clerk)는 법인의 비서로 활동하며, 법인 비서로서 이사회 회의 기록을 해당 목적으로 마련된 한 권 이상의 책에 보관하거나 보관되도록 해야 한다. 부칙 및 본 상규에 따라 또는 법률에 요구되는 대로 모든 통지가 적절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법인의 기록 및 인장을 관리해야 한다. 법인 인장이 부칙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된 모든 문서에 날인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서 직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 이사회가 수시로 정하는 기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3.1 서기(Stated Clerk)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정 내각은 인사위원회와 협의 후 임시 서기(Stated Clerk)를 임명한다.
2. 3.2 인사위원회는 기록 서기를 지정해야 하며, 이 기록 서기는 서기(Stated Clerk)를 위해 노회 회의 기록을 담당한다.
2. 3.3 서기(Stated Clerk)는 헌법과 노회 직무 설명. 서기는 조정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서기는 재산 및 재정 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원으로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2. 3.3.1 서기는 매년 정기 회의에 다음을 제출한다:
G-3.0301에 따라 말씀과 성례의 목사와 치리 장로 위원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한 추가 치리 장로 위원 선출을 권고한다. 이에 대한 절차는 행정 운영 지침에 포함된다.
2. 4 다음 직책의 임기는 회계 최대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선출은 일반적으로 노회의 11월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회계는 일반적으로 선출된 회의가 폐회된 후 직무를 시작한다. 회계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정 위원회는 임시 회계를 임명할 수 있다. 회계는 법인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 활동한다.
2. 4.1 회계는 지정된 경우 노회의 모든 자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2.4.2 재무관은 다음 사항을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법인의 재산 및 거래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장부와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재무관은 법률, 정관, 본 운영규정 또는 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 및 보고서를 송부하거나 송부되도록 해야 한다. 회계 장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조정위원회 구성원이자 법인의 이사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2. 4.3 재무관은 모든 현금 및 기타
귀중품을 법인 명의로 조정위원회가 지정한 예금 기관에 예치하거나 예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정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법인의 자금을 지출하고, 요청 시 회장, 이사회 의장 및 이사회에 재무관으로서의 모든 거래 내역과 법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조정위원회, 정관 또는 본 운영규정이 정한 기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2. 4.4 재무관은 위에 명시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 및 재산 위원회 위원장 및 집행
목사와 협의해야 한다.
2. 4.5 재무관은 당연직 구성원으로서
재정 및 재산 위원회에 참여하며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2. 4.6 재무관은 조정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제3장

운영 규정

3. 1 프레스비테리는 다음과 같은 권위 원천의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장로교 헌법[신앙고백서와 규정집]; 샌프란시스코 프레스비테리 정관; 샌프란시스코 프레스비테리 상설 규정; 프레스비테리 행정 운영 매뉴얼(승인된 정책 및 절차 포함). 회의는 일반적으로 최신판 로버츠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3. 2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위원회, 위원단 및 기타 단체는 프레스비테리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 구성원은 프레스비테리에 의해 선출된다.
3. 3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위원회, 위원단 또는 기타 단체 회의의 정족수는 해당 위원회, 위원단 또는 단체에 현재 소속된 선출 또는 임명된 투표 구성원의 과반수이다.
3. 4 모든 위원회, 위원회 및 기타 그룹(지명 위원회 제외)은 자체적으로 의장/조정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노회에 보고하고, 위에 열거된 권한 출처와 일치하는 내부 업무 수행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3. 5 위원회, 위원회 및 기타 그룹은 화상 또는 음성 전화 회의로 모일 수 있습니다. 노회의 전자 회의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은 섹션 1.11과 일치해야 하며, 긴급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6 위원회, 위원회 및 기타 그룹은 지역 교회의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감 있고 민감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교회가 위기를 피하고 사역에 필요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도록 돋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3. 7 샌프란시스코 노회의 대표자는 노회에 소속되거나 노회에 책임이 있는 이사회 또는 기관에 노회 절차에 따라 지명, 선출 또는 임명됩니다. 이러한 대표자는 노회 위원회, 위원회 또는 기타 그룹과 정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8 모든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노회의 다른 구성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특정 업무와 책임을 돋기 위한 회중들.
3. 9 헌법상의 권한이 위임된 어떠한 위원회나 커미션도 그 권한을 다른 그룹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상임 위원회

[“위원회는 연구하고 행동을 권고하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을 실행해야 합니다.
노회에 의해.” **G-3.0109**]

{본 상임 규정의 목적상, 위임된 목사/위임된 통치 평등화 요건을 위해 장로들은 '통치 장로'로 간주된다.

4. 1 노회는 생동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G-3.0109)

4. 1.1 위원회 구성원은 동일한 규모의 3개 분반으로 나뉜다.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가능한 한 말씀과 성례의 목사와 교인들의 수가 균등하게 구성된다 (G-3.0109).
4. 1.2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3년 임기로 선출되며, 두 번째 전임기 또는 부분 임기에 재선될 수 있다. 동일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다.
4. 1.3 위원회 구성원은 가능한 한 최대한 노회 구성원의 전체 스펙트럼과 다양성, 그리고 교회의 혼신을 반영해야 한다. 다양성(F-1.0403).
4. 1.4 위원회/위원회/실무그룹에서 선출한 위원회 사회자/의장은 4년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최대 4번까지 맡을 수 있다.
4. 1.5 모든 상임위원회(지명위원회 제외)의 구성원은 지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노회에서 선출한다.
 4. 1.5.1 상임위원회는 본 상임규정에 명시된 인원 외에 추가 구성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추가 구성원은 노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지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1.6 노회 11월 회의에서 실시된 선거는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시기에 실시된 선거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4. 1.7 어떤 위원회가 기존 위원회에 이익이 될 문제에 대해 조치를 시작할 경우 해당 구성원이나 그들이 속한 교회와 관련된 경우, 해당 인물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와 표결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4. 1.8 실행 프레스비터와 서기장은 당연직으로 상임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4. 1.9 모든 위원회는 인원을 임명하거나 일부 업무를 워킹 그룹(지속적인 업무용) 또는 프로젝트 팀(단기 또는 특정 업무용)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워킹 그룹이나 프로젝트 팀은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작업 내용과 권고 사항을 소속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2 조정 캐비닛 1

4. 2 조정 캐비닛은 프레스비터리의 전체 사명을 책임진다. 이 기구는 프레스비터리 내 모든 위원회의 조정 기구 역할을 하며, 위원회들의 업무 보고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프레스비터리에 제출될 행동 계획을 승인하며, 프레스비터리에 권고 사항을 제안한다.

1 'Cabinet'이라는 용어는 'Council' 대신 사용되었는데, 이는 'Order의 책'에서 'Council'을 교단의 4 치리 기구를 지칭하는 용어로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노회의 행동을 위한 제안에 관해 논의하고, 노회 회의의 의사 일정을 정하며, 노회 회의 사이에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나 노회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안에 대해 노회로서 행동하며, 노회의 모든 위원회에 대한 감독과 책임을 제공합니다. PC(USA)의 헌법, 정관, 부칙 및 상임 규정에 따라 조정 캐비닛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집니다:

- a. 가. 노회에 상임 위원회 구조와 직원 구성 방안을 제안
이는 사명과 비전 우선순위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여야 합니다.
- b. 나. 교회들 간의 협력과 교회와
뉴 워십핑 커뮤니티를 포함한 사역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
- c. 다. 노회 내 다양성과 그에 따른 은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여
보다 활력 있는 교회를 목표로 합니다.
- d. 노회 전체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 특히
각 개별 교회의 사역을 위한
- e. 노회의 선교 및 사역 이야기를 전달할 것; f. 재산 및 재정 위원회의 예산안을

8월/9월 회의에서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안한 후 승인하여
11월/12월 노회 회의에 제출할 예산을 확정할 것.
- g. 노회에 임명 위원회 위원(및 위원장)과
비전팀(제4.3.1조에 따라 구성)을 노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추천할 것.
- h. 노회는 선교 우선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그룹, 태스크포스, 위원회 및
기타 단체를 구성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조치를 노회에 보고한다.
- i. **Corporate Authori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alifornia Nonprofit Public
법률 및 관리 문서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인사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들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

2) 주된 집행 사무소 또는 주된 영업 사무소를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변경할 권한; 법인이 다른 주, 영토, 속령 또는 국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캘리포니아 주内外에서 사업을 수행할 권한; 및 연례 회의를 포함한 모든 회의를 캘리포니아 주
内外의 어느 장소에서든 개최할 수 있도록 지정할 권한.

2) 11

3) 법인을 대표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채무를 부담할 권한 및

- 3) 4). 조정 위원회는 관리 문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ause to be executed and delivered for the Corporation's purposes, in the corporate name, promissory notes, bonds, debentures, deeds of trust, mortgages, pledges, hypothecations and other evidences of debt and securities.
- 4) . The Coordinating Cabine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Governing 문서는 임원 또는 여러 임원, 대리인 또는 여러 대리인에게 회사 명의 및 대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문서를 실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이거나 특정 사례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도 회사를 어떤 계약이나 약속으로 구속하거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어떠한 목적이나 금액으로 책임지게 할 권한이나 권력을 갖지 않습니다. .

4. 2.1 조정 내각의 구성원은 말과 성례의 장로(Ministers of Word and Sacrament) 및 통치 장로(각각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짐)로 구성됩니다. 조정 내각은 다음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상임 위원회(비전 팀과 법안 및 청원 위원회 제외)의 의장/공동 의장(1인) 또는 그들이 지정한 대표; 즉직 전 의장(공동 의장)—내각의 의장이 됨—및 현직 의장과 부 의장/공동 의장; 노미네이팅 위원회가 추천한 3인의 일반 구성원(3년 임기로 교체되며, 교회 규모, 지역, 전문 사역, F-1.0404에 규정된 인종 및 민족 구성원 대표성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총회 노회장, 서기, 재무관은 당연직 구성원으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집니다.

비전 팀의 구성원은 조정 내각 회의에 참석하며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습니다.

4. 2.2 조정 내각은 분기별로 최소 한 번 이상 소집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노회 회의 최소 3주 전에 소집됩니다.
4. 2.3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 또는 시간 제약, 기타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조정 내각은 G-3.0109 및 3.0109b 조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노회의 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2.4 조정 위원회는 모든 사안을 접수, 검토한 후 노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 임원들의 서명을 승인할 수 있다.
4. 2.5 노회 법률 고문은 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 회의 간격 동안에는 총괄 노회장 또는 조정 위원회에서 수시로 지정한 기타 법인 임원의 지시를 받는다.

4. 3 비전팀

4. 3 비전팀(위원회와 동등)은 신학적·문화적 이해의 변화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회에 전략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이러한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제안한다.
4. 3.1 위원회는 3년 간격으로 선출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년 임기로, 실행 프레스비터, 프레스비터리 내각, 그리고 노미네이팅 위원회가 각각 교차 임기마다 한 명씩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프레스비터리에서 선출됩니다. 또한, 실행 프레스비터는 위원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고 참여합니다.
4. 3.2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전체 프레스비터리와 함께 우리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대화를 주도하고, 프레스비터리 내각에 그 비전과 일치하는 행동 우선순위를 권고해야 합니다.
4. 3.3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프레스비터리와 함께 신학적 및 문화적 이해의 변화와 프레스비터리가 이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4. 3.4 프레스비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도전을 수행하는 데
프레스비터리로서 도움
을 제공합니다.
4. 3.5 목회자와 교회들을 위한 워크숍, 모임,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며, 신학과 교회 분야의 신진 작가 및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소개하는 교회.
4. 3.6 노회의 기존 및 계획된 선교 사업을 평가하고 프로그램 감사를 제공하는 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며, 노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선교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노회 내각에 권고한다.
4. 3.7 이 위원회는 상기 규정된 권한과 책임 외에는 어떠한 권한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만, 독자적인 예산 항목을 보유한다.
4. 3.8 위원회는 투표권 없이 내각 회의에 참석할 위원 한 명을 선정한다.

4. 4 목회 위원회(COM):

4. 4 목회위원회의 목적은 G-3.0301, G-3.0303 및 G-3.0307에 따라 노회에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하고 노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때 노회의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a. 말씀과 성례의 목사들을 심사하고 노회에 받아들이는 일

노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일.

- b. b. 모든 청빙 및 청빙 조건 변경 승인. c. 목회 활동 검증. d. 안수 및 취임 위원회 승인. e. 무질서로 보고된 교회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G-3.0303d. 및 e. 그리고 3.0109b.(5) 준수).
f. 취임된 목사가 없는 경우 회중/교회의 당회장 지정
및/또는 취임된 목사가 당회장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상황에 따라 단일 회의에 대해 치리장로를 당회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위의 모든 행위 또는 일부는 다음 노회 회의에서 보고되어야 합니다.
노회.

- 4. 4.1 노회는 목회위원회에 최대 18명의 위원을 선출합니다. 이 중 절반은 이들은 말씀과 성례의 목사와 반(半) 통치 장로로 구성된다.
- 4. 4.2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최소 연 1회 정책 검토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며, 절차를 점검하고, 교육을 받으며, 업무 계획을 수립한다.
- 4. 4.3 위원회는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
responsibilities.
- 4. 4.4 위원회는 노회에서 채택한 운영 매뉴얼과
교단 지침서 및 핸드북에 따라 운영된다.
- 4. 4.5 위원회는 조정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팀에는 최소 한 명의
소규모 그룹 구성원과 노회 직원 연락관이 포함된다. 조정팀은 의제를 구성하고,
향후 회의를 계획하며, 전체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결정
을 내리거나 전체 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 4. 4.6 위원회는 노회의 성(性) 관련
부적절 행위 방지 정책. 위원회는 성적 부적절 행위 방지 정책의 요구사항에 따라
성적 부적절 행위 대응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필요 시 검토 및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서기실과 사역 위원회는 이 정책의 모니터링, 이행 및 시행을 담당합
니다.

4. 4.7 위탁 목사/장로 작업 그룹을 포함한 특정 작업 그룹은

사역 위원회(COM)의 관할 아래 있으며, 각 작업 그룹에는 최소한 한 명의 COM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가. 위탁 목사/장로 작업 그룹.

위원회는 사역 준비 위원회(CPM)와 협력하여 위탁 목사/장로의 교육, 훈련, 배치, 멘토링 및 감독을 담당하는 위탁 목사/장로 작업 그룹을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원은 지명 위원회를 통해 선출되며, COM과 CPM은 각각 최소한 한 명의 대표자를 작업 그룹에 파견해야 합니다. COM 대표자는 필요 시 적절하게 참여해야 하며, 특히 노회 앞에서의 회원 자격 심사 등에 관여해야 합니다.

이 작업 그룹은 COM과 CPM에 대해 책임을 지며, 회의록 사본을 해당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권고안을 COM에 제출해야 합니다.

COM과 CPM이 승인한 정책 및 절차 매뉴얼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 매뉴얼의 변경 사항은 COM과 CPM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절차와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COM은 매뉴얼이 COM 정책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위탁 목사/장로의 상세 목록을 작성하고, 그들의 위탁 일자 및 감독자와의 회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b. 중재 관리 실무 그룹

COM은 갈등 관리 기술 및 중재에 대해 훈련을 받은(또는 받을 예정인) 인원으로 구성된 중재 관리 실무 그룹을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원은 COM이 임명하며, 해당 팀은 COM에 대해 책임을 지고 COM 예산을 통해 훈련 및 경비를 지원받습니다. 노회는 이 팀에 직원 한 명을 배정해야 합니다.

이 팀의 임무는 교회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숙련되고 세심한 개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팀이 교회/당회/목사와 협력하도록 초청되어야 하지만, '질서서'의 규정에 따라 또는 COM의 지시에 의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4. 5 목회 준비 위원회(CPM):

목회 준비 위원회의 목적은 말씀과 성례의 목사로 안수받을 후보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지원자, 탐구자 및 후보자와 언약 관계를 맺는다
말씀과 성례의 목회를 준비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최소한 일년에 한 번씩은
 - b. 청교인들이 노회에서 시험을 볼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고,
추천과 함께 후보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한다.
 - c. 적절한 경우, 언약 관계 이전을 추천한다. d. 적절한 경우, 언약 관계 종결을 추천한다. e. 후보자들이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인증하고, 이 인증을 노회에 보고한다.
 - f. 치리 장로들이 위임받은
목사/위임 치리 장로가 되는 과정에 참여한다.
4. 5.1 노회는 CPM 위원회 구성원으로 최대 12명을 선출한다. 이 중 절반은 말씀과 성례의 목사이며, 나머지 절반은 치리 장로여야 한다.
4. 5.2 위원회는 노회에서 승인한 정책(운영
교역 준비 과정의 단계와 절차에 관한 매뉴얼) 및
교단 핸드북에서 참조할 수 있다.
4. 5.3 위임목사/위임통치장로 실무그룹 (참조:
제4.4.7a항)

해당 위원회는 교역위원회와 협력하여 위임목사/위임통치장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위임목사/위임통치장로의 교육, 훈련, 배치, 멘토링 및 감독을 총괄한다. 위원회는 실무그룹에 최소 1명의 대표를 파견해야 하며, 이 대표는 인증 심사를 포함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관여를 보장해야 한다.

4. 6 건강한 교회 위원회
4. 6 건강한 교회 위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포도원 한편에서 의미 있는 교역과 선교에 참여하는 번성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서기와 협력하여 G-3.0106항의 규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 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다. 가. 위원회는 노회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며,

매년 교역위원회에 이러한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OM).

b. 위원회는 각 교회가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건강한 교회 발전을 돋는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워크숍,
교육 기회, 세미나, 웹사이트, 전문가 등이 있다. 이 정보는

- 모든 회의 서기(클럭), 위임받은 목사(Commissioned Pastors), 그리고 말씀과 성례의 목사(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에게 제공될 것이다.
- c. 위원회는 기존의 리더십 훈련/수업/교회 발전 기회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리더십 개발을 장려한다. 또한 목사들과 교회들이 해당 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참가 비용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것이다.
 - d. 위원회는 COM과 협력하여 교회들이 미션 연구 준비 및 실행, 회중이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 유형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 미션 전략 수립
 - e. 위원회는 회중들로부터 보조금 및 대출 신청서를 접수한다. 그리고 COM과 협의하여 재정 및 재산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 f. 위원회는 COM 및 재정·재산 위원회와 협력하는 동시에 회중 관련 업무에 대해 집행 노회 직원과도 조율한다. 필요 시(COM과 협력하여) 위원회는 중재 관리 작업 그룹의 개입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어려움을 조사하거나, 회의를 지원하거나, 회중이 폐쇄 가능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행정 위원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4. 6.1 노회는 건강한

회중 위원회의 회원으로 최대 12명을 선출하며, 이는 노회의 모든 지침을 따른다. 한 명의 회원은 COM에서 배정될 수 있다.

4. 7 재산 및 재정 위원회(FPC):

4. 7 재산 및 재정 위원회(이사회)의 목적은 노회의 재정과 재산에 대한 신탁 감독을 제공하여 이러한 자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G-4.0201 "미국 장로교(PCUSA), 그 의회 및 교회 구성체의 재산은

을 위한 the 달성 of the 사명 of 예수 그리스도.” 위원회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가. 모든 위원회 및

- 실무 그룹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 과정을 수립하고 실행하며(내각을 통해) 노회의 가을 정기회의에 차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최종 예산은 노회의 연말 회의에서 승인된다.
- b. 나. 연간 예산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을 감독하고, 재정 현황을 매 노회 회의에서 보고하며, 예산 조정/수정을 권고한다;
 - c. 다. 신탁 책임에 부합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 d. 라. 내각에 노회 인당 할당액(Per Capita Apportionment)을 권고한다. 노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에 따라

- e. 마. 특별 기금 및 지정 기부금의 지출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부금과 보조금
- f. 바. 지원 교회들 또는 노회 위원회들에 예산 및 요청 시 또는 필요 시 재정/내부 통제를 수행한다.
- g. G-4.02에 따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본 자산을 관리한다.
G-4.02에 따라
- h. 노회를 위한 협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오류 및 생략 보상, 고용 관행 책임, 임원 및 이사 보험 포함)을 확보하고 보상 금액 및 보험사(들)를 매년 최소 한 번 노회에 보고한다.

- i. 권고 대출 승인, 임대 계약서, 등, 및 조언
교회에 재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 j. 건강한 교회 위원회에 모든
교회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에 대한 분기별 회계 보고를 제공합니다.
- k. 건강한 교회 위원회 및/또는
목회 위원회, 그리고 실행 노회장과 협력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회들
 - 1. 협의회와 협의하여 매년 전체 재정 검토를 준비하고
그 결과를 노회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G-3. 0113).
- 4. 7.1 노회는 재정 및 재산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최대 15명을 선출해야 한다.
재산 위원회. 이 중 절반은 말씀과 성례의 목사여야 하며, 나머지 절반은 치리 장로여야 한다. 노회장, 재무관과 법인 서기(노회 서기)는 당연직 멤버로, 투표권은 없으나 발언권을 가진다.
- 4. 7.2 노회는 예산(들)을 변경하는 어떠한 제안도 검토하지 않아야 한다.
재정 및 재산 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노회
또는 조정 위원회
- 4. 7.3 G-4.0206에 따라, 위원회는 검토하고 다음에 권고해야 합니다
교회 재산의 매각, 담보 설정 또는 임대와 관련된 교회들의 모든 요청에 대해 노회의 조치를 검토하고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교회들의 재산 취득, 건축, 리모델링 또는 처분을 지원해야 합니다.
- 4. 7.4 위원회는 다음을 통해 노회에 보고, 검토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조정 위원회의 조치 s 재산 및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며, 재정 및/또는 재산에 관한 법적 문서는 변호사의 검토 없이 노회를 대표하는 임원들에 의해 실행되지 않으며,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4. 8

인사 위원회

4. 8 인사위원회의 목적은 모든 행정 직원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제공하고, 노회를 대표하여 실행 노회장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서기는 과도기 실행 노회장을 통해, 그리고 이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노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4. 8.1 인사 정책 매뉴얼과 직원 핸드북을 개발하고, 해당 정책 및 핸드북의 필요한 변경 사항을 권고한다. G-3.0110에 따라, 행정 운영 매뉴얼(3.0106)에 실행 직원의 선출 과정과 다른 직원의 채용, 직위의 책임 설명, 성과 검토 방법, 그리고 고용 종료 방식을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범위와 연간 급여 조정을 개발하고 권고하며, 연간 성과 검토를 감독해야 합니다.
4. 8.2 노회는 이 위원회에 최대 7명의 위원을 선출합니다. 실행 노회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발언권은 있지만 vote.
4. 8.3 위원회는 규정집(F-1.0403, G-3.0106) 및 규정이 정한 균등 고용 기회와 포용 및 다양성 원칙과 관련된 모든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4. 8.4 실행 노회장은 노회 소속 모든 직원을 감독합니다.

4. 9 후보 추천 위원회

4. 9 후보 추천 위원회의 목적은 노회의 다양성과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한 은사와 기술을 반영하여, 지시에 따라 (후보 추천 위원회 및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원, 기타 인사 등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4. 9.1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회 및 의장/부의장(또는 공동 의장)의 공석을 신속히 채워야 하며,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추천.
4. 9.2 위원회는 채워야 할 직책 목록과 지난 9년간의 위원회 구성원 이름을 유지해야 한다. 가. 위원회는 노회 직원과 협력하여 모든 안수받은 목사, 위임받은 목사/위임받은 치리 장로, 그리고 회의 서기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하며, 그들의 소속 교회와 연락처 정보를 명시한다. 이 정보는 목회 위원회, 목회 준비 위원회, 새로운 예배 공동체 위원회, 건강한 교회 위원회, 그리고 대표성, 소속감 및 권한 부여 위원회와 공유될 수 있다.

4. 9.3 노회는 추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최대 12명을 선출해야 한다.
이 중 절반은 말씀과 성례의 목사이며, 절반은
교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4. 9.4 위원회는 신학적 관점(개혁 전통과 일치하는 경우 제외), 인종, 민족적 배경, 나이, 성별, 신체적 제한, 성별 정체성, 또는 지역에 대한 편견 없이 잠재적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
위원회는 대표성, 소속감 및 권한 부여 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상의해야 한다.

4. 9.5 위원회는 각 교회가 장로 대표단이 참석하고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원 수와 동일한 후보자 풀을 마련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을 교회 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노회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할 자격이 있는 인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4. 9.6 후보 추천 위원회의 구성원과 위원장은
조정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노회에서 선출한다.

4. 10 대표성, 소속감 및 역량 강화 위원회(CORBE)

4. 10 대표성, 소속감 및 역량 강화 위원회의 목적은 G-3.0103 및 F-1.0403에 따라 노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대표성을 옹호하고, 노회 및 그 구성 단체를 위한 다양성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4. 10.1 노회는 대표성, 소속감 및 역량 강화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최대 9명을 선출해야 한다.
대표성, 소속감, 그리고 권한 부여

4. 10.2 위원회는 노회의 임명 위원회와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 위원회와도 협의해야 한다.

4. 11 법안 및 건의 위원회

4. 11 법안 및 건의 위원회의 목적은 총회에 제출된 건의안과 총회에서 제안된 개정안을 검토하여 노회의 조치를 위한 권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헌법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상임 규칙의 개정을 권고해야 합니다.

4. 11.1 위원회는 최근 총회의 대의원 및 자문 대표들로 구성되며, 서기 직원이 스태프로 참여한다.
가장 최근의 총회 대의원들과 서기 직원이 스태프로 참여한다.

4. 11.2 만약 참여 가능한 대의원이 4명 미만일 경우, 서기 직원은
최근 총회 중 다음으로 최근에 열린 총회에서 충분한 수의 위원을 임명하여 위원회에 최소 4명의 구성원이 있도록 할 수 있다.

4. 11.3 이 위원회는 조정 위원회에 대표를 두지 않는다.

4. 12 새 예배 공동체 위원회

4. 12 새 예배 공동체 위원회는 모든 새 예배 공동체(NWC)의 형성을 감독하며 (G-3.01301b 참조), NWC의 형성 및 운영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재정 및 재산 위원회와 협력하여) 재정 지원 필요성과 NWC를 노회의 삶에 통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NWC의 사역을 평가하고 노회에 권고해야 한다.

4. 12.1 NWC에 대한 모든 제안(재정 관련 포함)은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노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4. 12.2 이 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출된 9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말씀과 성례의 장로와 교인들의 수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성원들은 3년의 교차 임기로 선출되며, 어떤 구성원도 연속으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습니다.

4. 12.3 또한, 위원회는 다음 위원회에서 한 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목회 위원회(COM)의 투표권을 가진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a. 가. 이 사람은 적절한 경우 COM의 참여를 보장하고
NWC의 목회 리더십 선정과 멘토링에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NWC가 정식 교회로 전환을 원할 때 건강한 교회 위원회의 구성원의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4. 12.4 노회는 이 위원회를 위해 직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4. 12.5 만약 NWC가 미국 장로교(PCUSA)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위원회는 협조 위원회에 NWC와 함께 정식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 위원회 구성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4.12.6 위원회의 업무는 COM과 건강한 교회 위원회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COM과 건강한

4. 교회 위원회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ongregations Committee to ensure that it aligns with COM and Healthy
회중 위원회 정책 및 절차

제5장

실무 그룹, 태스크 포스, 프로젝트 팀

다음은 실무 그룹은 일반적으로 노회의 행정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실무 그룹은 조정 위원회나 위원회에 의해 생성 및 해체되며, 이들에게 책임을 집니다. 정해진 종료일이 없으며 이러한 그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행정 운영 매뉴얼에 포함됩니다.

노회(및 그 위원회) 또한 생성 및 해체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 태스크 포스 및 프로젝트 팀 (정해진 종료일) , 그리고 노회의 사명 우선순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임시 그룹. 이러한 그룹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행정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 1 구성원은 말씀과 성례의 목사이거나 교회 구성원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년의 갱신 가능한 임기를 수행합니다. 5.2 노회 회의 작업 그룹 . 내각은 노회 회의를 계획하고 조정하기 위해 최대 6명을 임명할 것입니다.

5. 3 파트너십 및 정의 작업 그룹. 내각은 최대 6명을 작업 그룹에 임명할 것입니다.

제6장

상임 및 단기 위원회

6. 1 상임 사법 위원회

6. 1 상임 사법 위원회의 목적은 상임 사법 위원회 (PJC)는 헌법의 '교회 징계' 조항에 명시된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6. 1.1 노회 PJC는 최소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선출 및 임기는 '교회 징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각 임기 시작 시, PJC는 위원장과 서기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위원장과 대체 서기를 선출해야 합니다.

6. 1.2 징계 관련 협의를 다루기 위해 조사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서기, 의장 및 부의장(또는 공동 의장)은 교회 규율(D-7.0501)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D-7.0501)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다음 노회 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6. 1.3 시정 요구 사항을 다루기 위해 상담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서기, 의장 및 부의장(또는 공동 의장)은 교회 규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6. 1.4 상임 재판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회의록에 포함되며 노회의 영구 기록의 일부로서 노회에 보관됩니다. 재판 절차에서 발생한 기타 기록은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6. 2 회의 기록 검토 위원회

6. 2 회의 기록 검토 위원회의 목적은 연례 회의 기록 검토를 조정하고 회의 서기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6. 2.1 서기장의 추천을 받아 노회는 최대 6명의 인원을 회의 기록 검토 위원회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말과 성례의 목사와 통치 장로의 수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3년의 교차 임기로 선출되며 위원은 최대 6년 까지 복무할 수 있습니다.
6. 2.2 위원회는 G-3.0107 및 G-3.0108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각 교회의 회의록과 기록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년 노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6. 2.3 위원회는 G-3.0108b "특별 행정" 조항에 따라 "검토"를 통해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를 해당 노회 위원회 또는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속 3년간 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의에 대한 원래의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행정 위원회가 자동으로 구성된다.
6. 2.4 위원회는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 절차를 모든 회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
6. 3 기타 행정 위원회
6. 3 노회는 (G-3.0109b에 따라) 회부된 사안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한 기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노회는 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해당 권한에 대한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부여된 임무 완료 시 노회에 의해 해산된다.
6. 3.1 위원회는 가능한 한 균등하고 업무 수행에 충분한 수의 다양한 교회 출신의 말씀과 성례 목사 및 장로로 구성되어야 한다(G-3.0109b). 안수 및 취임 위원회는 의장/공동 의장 또는 그 대리자를 포함하여 최소 5명의 구성원을 두어야 한다.
6. 3.2 행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노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 서기, 의장 및 부의장(또는 공동의장) 또는 협의회가 행정위원회를 임명하고 다음 노회 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6. 3.3 노회는 때때로 행정위원회를 임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 교회 내부의 분쟁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G-3. 0109 b) (위의 SR 4.6.f 참조)

6. 3.4 행정위원회가 특정 교회와 협력하기 위해 임명된 경우,
해당 교회의 말씀과 성례 목사 및 사역을 담당하는 노회 위원회들은 행정위원회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6. 3.5 행정위원회가 활동 중일 때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업무 완료 시 노회에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6.3.5 행정위원회가 활동 중일 때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업무 완료 시 노회에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6. 3.6 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서기(Stated Clerk)는 위원회와 만나
교회 정치와 관련된 절차 문제, 그리고 그들의 권한 범위와 한계에 대해 교육을 실
시한다. 서기 및 기타 직원들은 요청 시 행정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노회 간 연합 위원회

7. 1 앤 펜케 기념 기금 자문 위원회
7. 1 이 위원회의 목적은 앤 펜케 기념 기금의 수익을 매년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레드 우즈 노회가 추천하고 그 범위 내에 있는 선교 프로젝트에 배분하는 것이다.
7. 1.1 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레드우즈 노회 출신 위원들로 구성된다.
7. 1.2 샌프란시스코 노회에서 3명의 위원을 선출하며, 이들은
3년의 임기를 교대제로 수행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선출된 위원들은 적절한 대
표성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한 재산 및 재정 위원회 또는 조정 위원회 소속 1인, 말
씀과 성례 목사 1인, 그리고 교인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7. 1.3 본 위원회의 운영은 앤 펜케 기념 기금
신탁 증서에 따른다.
7. 2 자기개발위원회(SDOP): 본 위원회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레드우즈 노
회 관할 내 선정된 프로젝트에 SDOP 기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7. 2.1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레드우즈 노회에서 각각 3명씩 선출한다. 샌프란시스코 노
회에서 선출된 3명의 위원은 3년의 교대제 임기를 수행하며, 최소 2명은 인종/민
족적 소수자여야 한다. 이들은 노미네이팅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다.

제8장

법인

8. 1 G-4.0101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노회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 법인은 재산을 수령, 보유, 양도할 수 있고 노회가 수시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법인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2 해당 법인의 명칭은 '샌프란시스코 노회'입니다. 채택된 정관과 규약은 샌프란시스코 노회에 의해 이 법인의 권한과 목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본 상규는 정관 및 규약과 일치해야 합니다. 서기는 5년마다 상규가 규약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8. 3 캘리포니아 법인법 제9210조(b)항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노회의 조정 위원회(규약 제4.2조 및 제2조)는 이 법인의 이사회 역할을 합니다. 이사회는 본 상규에서 현재 또는 향후 명시적으로 승인된 바에 따라, 특정 법인 권한을 신탁 이사회(G-4.0101)에 위임할 수 있으나, 최종 검토 및 결정 권한은 항상 본 이사회에 유보됩니다.
8. 3.1 신탁 이사회는 재정 및 재산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며, G-4.0101에 명시된 신탁인 관련 규정에 따라 규약, 상규, 그리고 질서서가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8. 3.2 이러한 책임에는 (다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법인을 대신하여 재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수령, 보유, 담보 설정, 관리 및 양도할 권리가 포함되며, 단 부동산 매매 및 저당 설정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이사들이 행동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증서를 수령하고 실행할 권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방어할 권리, 그리고 지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구적 특별 기금을 제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권리가 포함된다.
8. 4 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본 상규 제2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9장

노회 인사

9. 1 노회는 선교 비전을 실현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고용한다.

9. 2 노회에서 선출된 노회 직원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집행 노회장과 서기로 구성된다.
9. 2.1 집행 노회장과 서기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노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9. 2.2 기타 직원들은 직속 상사와 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노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9. 3 노회 직원의 채용, 보상, 징계 및 해고는 노회 직원 핸드북과 행정 운영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다.
9. 4 노회 인사 정책 및 직원 핸드북에는 성과 계획 및 평가 시스템과 개인 발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장

규정 개정 및 정지

10. 1 상임 규정의 개정안은 노회 조정 위원회가 노회에 제안한다. 개정안은 연속된 정기 노회 회의에서 두 번 읽혀야 하며, 첫 번째 읽기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며 토론할 수 없다. 이 상임 규정은 두 번째 정기 회의에서 출석한 투표 위원의 60%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
10. 2 행정 운영 매뉴얼은 서기와 조정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작성된다. 이후의 개정안은 서기, 조정 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가 노회에 제안할 수 있다. 운영 매뉴얼 문서는 제출 후 두 번째 정기 회의에서 단순 과반수 투표로 개정될 수 있다.
10. 3 부칙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개정될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
10. 4 상임 규정 중 회사 지배 구조 및 법적 요건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의 정지를 위해서는 회의 자료 패킷에 통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등록된 회원 중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노회 정책의 경우, 특정 회의 자료 패킷에 면제 요청 통지가 포함된 상태에서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